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도

2012. 04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목 차

1.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도 개요	1
2. 인증대상설비	2
3. 인증기관 및 성능검사기관	3
4. 인증제도 업무체계	5
5. 인증신청 및 처리절차	7
6. 인증신청서류	13
7. 설비인증 수수료 및 성능검사비용 지원	15
8. 인증유효기간 및 연장	15
9. 사후관리	16
10. 인증 표지	17
11. 기타사항	18
12. FAQ	20
13. 인증신청서류 양식	30
14. 인증신청 제출서류 CHECK LIST	40
15. 기타 참고 양식	42

본 자료는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제도에 대한 개요를 설명한 것이므로 상세한 자료는 관련 법령, 고시, 지침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energy.or.kr “인증제도”참조)

1.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도 개요

□ 인증제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

□ 추진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이하“법”) 제13조~16조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인증, 설비인증신청, 성능검사기관 및 인정기관 지정 등)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이하“령”) 제20조~제21조 (성능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성능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등의 공고)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시행규칙(이하“규칙”) 제3조~제10조 (인증기관의 업무범위, 인증대상설비, 인증심사절차,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인정심사기준, 인증의 사후관리, 인증의표시, 수수료 등)
-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51호(이하“고시”)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업무 운영규정』 (이하“공단규정”)

□ 인증신청 자격요건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

□ 인증설비 보급 촉진

- 지식경제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설비인증을 받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등에 우선 사용 등

□ 설비인증 취소

- 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설비인증을 취소함,
- 설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비인증 심사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발견된 경우에는 설비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

2. 인증대상설비(11.10월 말 기준)

구 분	인증 대상 설비
1. 태양열설비	1) 평판형 태양열집열기 2) 고정집광형 태양열집열기 3) 진공관형 태양열집열기 4) 자연순환식 태양열온수기(저탕용량 600리터 이하) 5) 강제순환식 태양열온수기(저탕용량 600리터 이하) 6) 진공관 일체형 태양열온수기(저탕용량 600리터 이하)
2. 태양광설비	1) 태양광발전용 계통연계형 인버터(정격출력 10kW 이하) 2) 태양광발전용 계통연계형 인버터(정격출력 10kW초과 250kW이하) 3) 태양광발전용 독립형 인버터(정격출력 10kW초과 250kW이하) 4) 태양광발전용 독립형 인버터(정격출력 10kW 이하) 5) 결정질 태양전지 모듈 6) 박막 태양전지 모듈 7) 태양전지 셀 8) 태양광 집광채광기 9) 태양광발전용 접속함
3. 풍력설비	1) 소형 풍력발전시스템(용량 30kW 미만) 2) 소형 풍력발전용 인버터(정격출력 10kW 이하) 3) 중대형 풍력발전시스템(용량 30kW 이상)
4. 지열설비	1) 물-물 지열 열펌프 유니트(280kW 이하) 2) 물-공기 지열 열펌프 유니트(105kW 이하) 3) 물-공기 지열 멀티형 열펌프 유니트(105kW 이하)
5. 연료전지설비	1) 고분자연료전지시스템(5kW 이하)
6. 바이오설비	1) 목재펠릿 온수보일러(58.14kW 이하)
7. 기타설비	1) 축전지(4,000A이하) 2) 모니터링설비 3) 충전제어시스템(5kW 이하)

주) 인증대상설비의 적용범위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심사기준 중 설비심사기준의 세부기준을 따른다.

3. 인증기관 및 성능검사기관

□ 인증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센터”)

- 인증심사기준에 따른 인증심사
 - 일반심사(공장확인) : 제조 및 생산, 품질유지 및 사후관리능력 확인, 시료채취
 - 설비심사(성능검사) : 성능검사기관이 발행한 성능검사결과서 심사
-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 발급
- 인증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생산 판매실적 관리
- 인증 현황 등 인증 업무와 관련된 각종 통계 및 자료의 유지·관리 등

□ 성능검사기관

- 성능검사기관 지정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설비인증대상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 검사장비 및 전문인력을 갖출 것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 성능검사기관 역할
 - 설비심사기준에 따른 성능검사
 - 성능검사 후 성능검사결과서 발행(성능검사 완료 후 30일 이내 발급)
- 성능검사기관지정 : 기술표준원에서 지정
- 성능검사기관지정 취소
지식경제부장관은 성능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성능검사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성능검사 업무를 중단한 경우
 3. 성능검사기관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참고> 성능검사기관 지정현황(‘12.2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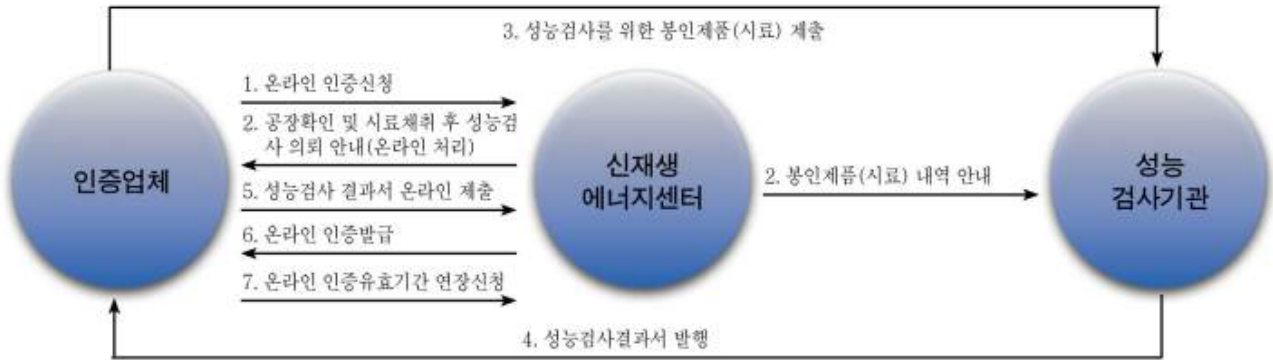
분 야	품목명	기관명	전 화	수수료*	
				(천원)	
태양열	· 태양열집열기 평판형, 고정집광, 진공관)	에너지기술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042-860-3562 02-860-1483	5,770	
	· 태양열온수기(자연순환, 강제순환, 진공관 일체형)	에너지기술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042-860-3562 02-860-1483		7,767
		생산기술연구원	041-589-8335		
태양광	· 태양광발전용 계통연계형, 인버터(정격출력 10kW이하)	에너지기술연구원	042-860-3319	8,722	
		산업기술시험원	031-500-0512		
		한국전기전자 시험연구원	031-428-7533		
	· 태양광발전용 독립형 인버터(정격출력 10kW이하)	에너지기술연구원	042-860-3319	4,945	
		산업기술시험원	031-500-0512		
		한국전기전자 시험연구원	031-428-7533		
	· 결정질 태양전지 모듈	에너지기술연구원	042-860-3472	18,024	
		산업기술시험원	031-500-0324		
		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	031-428-7568		
	· 박막 태양전지 모듈	산업기술시험원	031-500-0325	36,224.50	
· 태양광 집광채광기	미정	-	-		
· 태양전지셀	미정	-	-		
· 태양광발전용 계통연계형 인버터 (정격출력 10kW초과 250kW이하)	미정	-	-		
· 태양광발전용 독립형 인버터 (정격출력 10kW초과 250kW이하)	미정	-	-		
· 태양광발전용 접속함	미정	-	-		
풍력	· 소형풍력발전 시스템	에너지기술연구원	042-860-3431,3434	18,872	
		강원대학교	033-250-6371		
	· 소형풍력발전용 인버터	산업기술시험원	031-500-0512	4,386	
	· 중대형 풍력발전용 시스템 (용량 30kW 이상)	블레이드, 소음시험	한국표준과학연구원	042-868-5307,5386	92,046
		출력 및 하중시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042-860-3568	58,498
전력품질시험 설계평가		한국전력 전력연구원 (사)한국전급	042-865-5812 042-869-9502	7,966 68,732	
지열	· 지열열펌프유니트 (물-물)	냉동공조인증센터	031-500-3821	4,415	
	· 지열열펌프 유니트(물-공기)		031-500-3821	4,120	
	· 물-공기지열 멀티형 열펌프 유니트		031-500-3821	4,903.60	
연료전지	· 독립형 고분자연료전지시스템	에너지기술연구원	042-860-3782	11,500	
	· 계통연계형 고분자연료전지시스템			14,500	
바이오설비	목재펠릿 온수보일러(58.14kW 이하)	산업기술시험원	02-860-1554	7,496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042-860-1279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 흥회	031-480-2981~4		
기타	· 축전지(납축전지)	전기연구원	055-280-1664	15,502	
	· 축전지(NiCd전지)		055-280-1664	14,682	
	· 모니터링설비	미정	-	-	
	· 충전제어시스템	미정	-	-	

*수수료는 노임단가기준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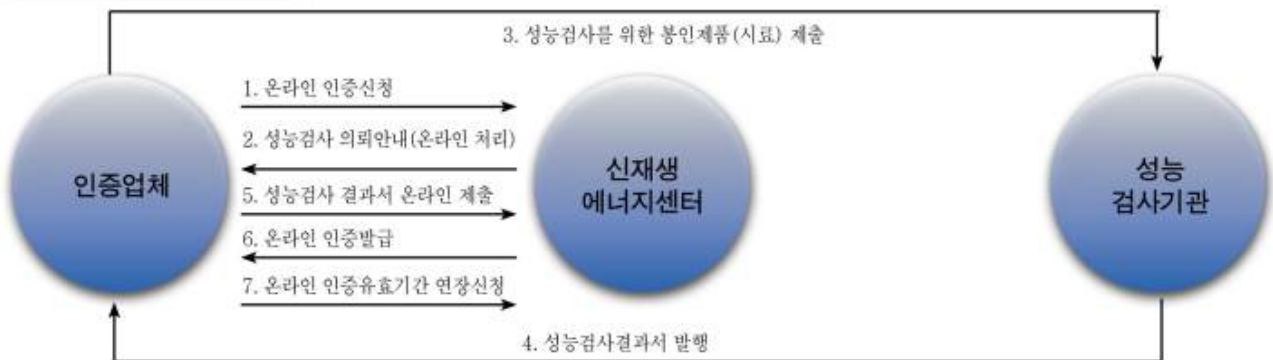
4. 인증제도 업무체계 및 개요

□ 인증제도 업무체계

최초인증신청



추가인증신청



* 추가신청 : 인증 받은 동일 품목의 모델추가에 한하여 추가 신청 시 공장심사 면제

- ▶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1회 제한(합격에 한함), 예산한도 내에서 성능검사 비용 80% 지원
성능검사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인증 신청서 양식(지식경제 부고시 제2012-51호 별지 제1호 서식)작성 시 지원 여부를 체크해야 함.
- ▶ 인증신청업체(제조업체)에 대한 공장확인 시 심사원이 시료를 채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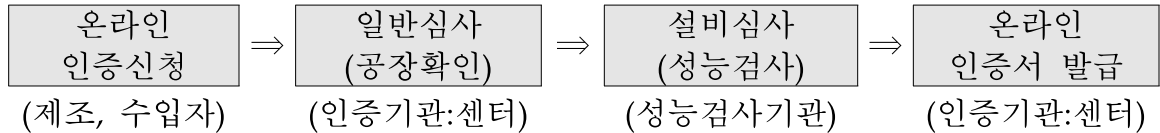
□ 인증제도 개요

1. 문의 및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 내용 파악(www.energy.or.kr-사업안내-인증제도) ○ 전화: 031-260-4696,4659, 451~4 ○ 팩스: 031-260-4669 ※ 사전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내용 숙지 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 인증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www.energy.or.kr) '인증제도' 페이지에서 인증신청서류를 다운받아 작성 후, 홈페이지의 '설비 보급관리 전자민원-설비인증제도-인증신청'으로 온라인 신청
↓	
3. 수수료 납부 및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신청 시(국내제품) : 564,300원 ○ 추가신청 시(국내제품) : 383,900원 ○ 최초신청 시(해외제품) : 383,900원 + 공장확인 체제비용(항공료, 체제비) ○ 추가신청 시(해외제품) : 383,900원 ○ 계좌 : 기업은행 481-004277-04-410 (예금주: 에너지관리공단)
↓	
4. 일반심사 (공장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 및 생산능력, 품질 유지관리 능력, 사후관리의 적정성에 관한 심사 실시, 시료 채취 ○ 추가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품목의 모델추가에 한하여 추가 신청 시 공장심사 면제
↓	
5. 설비심사 (성능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 의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심사 합격 후 지정 성능검사기관에 시험 신청 ※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1회, 예산한도 내에서 성능검사 비용 80%지원
↓	
6. 성적서 검토 및 인증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성적서 검토 결과 적합 시, 인증여부 최종 결정
↓	
7. 인증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서 온라인 발급(전산시스템에서 인쇄 가능) ○ 의뢰한 설비에 대해 인증마크 사용권한 부여
↓	
8.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설비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확보를 위해 공장확인 및 성능검사 실시 ○ 사후관리 불합격 시 인증 취소

5. 인증신청 및 처리 세부절차

□ 인증신청 처리절차

- 인증은 업체의 생산, 품질유지, 사후관리능력 등 일반심사(공장확인)와 제품성능, 내구성 등 설비심사(성능검사)로 2원화하여 실시
- 신재생에너지설비 제조자, 수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심사 후 인증서 발급



- 인증신청 단계별 상세설명

1. 인증신청서 제출(인증신청자)
 - 일반심사(공장확인)에 필요 서류 온라인 제출
2. 서류검토(신재생에너지센터)
 - 일반심사(공장확인)에 필요한 서류 검토 후 수수료 납부요청
3. 인증수수료 납부(인증신청자)
 -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수수료 납부
 - * 기업은행 481-004277-04-410 (예금주: 에너지관리공단)
4. 접수결과 안내(신재생에너지센터)
 - 신청모델에 대한 접수 후 일반심사일정 안내공문 온라인 발송
 - * **최초인증 신청이 아닌 추가인증 신청일 경우, 일반심사(5번에 해당)가 생략되므로, 일반심사 일정안내가 아닌 성능검사의뢰 안내공문이 발송됨**
5. 일반심사(신재생에너지센터)
 - 공장확인 수행, 합격일 경우 공장확인결과 및 성능검사 의뢰 안내공문 온라인 발송
6. 시료제출(인증신청자)
 - 일반심사 시 신재생에너지센터 심사자가 채취한 시료를 **공장확인결과 및 성능검사 의뢰 안내공문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정 검사기관에 제출
 - * **최초인증 신청이 아닌 추가인증 신청일 경우, 성능검사의뢰 안내공문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정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료는 인증신청자가 직접 지정
7. 설비심사(성능검사기관)
 - 성능검사 수행, **검사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결과서 발행
8. 성능검사결과서 접수(인증신청자)
 - 검사결과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서 발행요청 공문과 성능검사 결과서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온라인 제출
9. 인증서발급(신재생에너지센터)
 - 성능검사결과서 검토 후 인증서 온라인 발급

- ※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1회(합격에 한함)제한, 예산한도 내에서 성능검사 비용 80% 지원
- ※ 성능검사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인증 신청서 양식(지식경제부고시 제 2012-51호 별지 제1호 서식)작성 시 지원 여부를 체크해야 함.

인증 신청

□ 일반심사기준에 관한 서류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51호(12'.2.24)“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에 관한 규정” 제6조(인증 신청등)관련)

- 인증 신청서
- 신청업체 관련 서류(필수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제조물책임보험증서(PL보험증서), 중소기업기준 검토표(중소기업에 한함), 설비공급계약서(수입업체에 한함), 신청업체 현황 (인증 신청서류 양식참조), 인증신청 설비제원(도면포함) 현황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제조 및 생산능력 관련 서류
 - 업체현황 및 기술개발 실적
 - 제조설비 현황, 사양, 보수유지
 - 제조 공정별 설명 및 사진
 - 신청제품의 설계도면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품질유지관리능력 관련 서류
 - 원자재 검사 및 외주업체 관리
 - 품질관리 체계 및 교육체계
 - 품질 유지를 위한 계측장비, 검사설비 현황 및 검, 교정 상태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사후관리 관련 서류
 - 사후관리체계
 - 사후관리 및 보증내용
 - 설비 설명서 및 시공 지침서
 - 명판 표시사항
- 기타 일반 심사에 필요한 서류

☞ 동일설비에 대한 인증을 추가로 취득코자 할 경우, 최초 인증 시 첨부된 서류를 기준으로 변경된 사항만 제출

동일 설비를 복수의 수입업체가 수입하는 경우에는 모델명을 상이하게 생성하여 인증 신청을 하여야 함.

인증 심사

- 인증심사는 **일반심사**와 **설비심사**로 이루어지며, 일반심사에서 합격한 설비에 한하여, 설비심사를 실시한다.
 - 일반심사는 “일반심사기준”(신·재생에너지 인증품목 공장확인기준)에 따라 공장확인을 통하여 심사하는 것이며, 필요 시 인증신청설비의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해 공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
 - 설비심사는 지정된 성능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성능검사결과서를 “설비심사기준”(신·재생에너지 인증품목 기술기준)에 따라 심사하는 것임.
- 인증신청 시 제출한 구비서류를 검토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2회에 한하여 각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관련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서류보완의 요구는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구두 또는 유선으로 할 수 있음. 기간 내에 서류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류를 신청인에게 반려할 수 있음.
- 인증대상품목 특성에 따라 유사 모델들을 군으로 분류하여 인증심사 가능.
- 군별 대표 모델에 대해 인증을 취득한 자는 같은 군에 속한 유사 모델의 경우 설비심사 세부기준에서 따로 정한 성능검사항목만 실시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으나, 군의 특정 모델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 부적합한 경우 같은 군의 유사모델까지 인증이 취소됨.

가. 일반심사 일정통보

-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이하“센터소장”)은 인증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온라인으로 통보(심사자, 실사일자 통보)
 - ☞ 단, 최초인증 신청이 아닌 추가인증 신청일 경우, 일반심사(5번에 해당)가 생략되므로, 일반심사일정 안내공문이 아닌 성능검사의뢰 안내공문이 발송됨

나. 일반 심사(공장확인)

- 공장확인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국내공장과 수입품을 제조하는 해외공장에 적용하며, 공장확인 결과 합격일 경우 인증신청자는 심사원이 채취한 시료를 지정받은 성능검사기관에 성능검사 의뢰안내공문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시험의뢰토록 함.
- 공장확인은 인증대상품목별 인증을 처음 신청할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나, 소재지의 이전 등에 따라 공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재실시할 수 있음.

- 공장확인 인원 및 기간 : 국내공장 1인 1일, 해외공장 1인 2일
- 제조 공정 확인
 - 인증신청서류 내용을 제조과정 등에 실제 적용하는지 확인
 - 공장확인 시 신청모델의 제조공정을 확인
- 공장확인 보고서 작성 등
 - 관련서류, 제조공정, 경영자 및 담당자 면담을 근거로 보고서 작성
 - 종합점수가 75점 이상 합격, 60점 이상 75점 미만 보완, 60점 미만은 불합격
 - 보완의 경우 30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종합점수가 75점 이상이라도 심사항목 별 점수가 해당항목의 60%이하는 불합격처리하며, 일반심사(공장확인)서류의 허위작성, 국제기준 미달 등 중대한 부적합 사항일 발견 시는 불합격처리 할 수 있음
 - 불합격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
(재심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처음 인증신청 시 제출한 서류 중 변경된 부분만을 신청)
- ☞ 인증신청자는 공장확인결과 및 성능검사의뢰 안내공문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원이 채취한 시료를 성능검사기관에 시험 의뢰하여야 함.
단, 최초인증 신청이 아닌 추가인증 신청일 경우, 성능검사의뢰 안내공문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인증신청자가 지정한 시료를 성능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함.

인증 신청자는 인증신청 시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 해당 생산설비가동여부를 확인 및 준비하고 담당자와 면담이 이루어져야함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 공장확인 기준 >

- (1)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원자재 관리의 적정성
 - 가. 외주업체의 등록관리 및 평가
 - 나. 원자재·부품 검사의 문서화 및 시행 여부
 - 다. 원자재·부품 부적합 처리
- (2) 신·재생에너지설비의 품질유지관리능력의 적정성
 - 가. 품질관리의 문서화 및 조직 구성
 - 나. 신·재생에너지설비 제조검사 기록 유지
 - 다. 신·재생에너지설비 불량품 처리 여부
 - 라. 품질관리 담당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 여부
- (3) 신·재생에너지설비 제품개발 및 제조능력의 적정성
 - 가. 당해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최근 3년간 기술개발 및 제품 개량화 실적
 - 나. 기술개발 조직의 구성 및 운영
 - 다. 신·재생에너지설비 제조장비의 보유 및 관리 여부
 - 라. 신·재생에너지설비 계측장비의 보유 및 관리 여부
 - 마. 신·재생에너지설비 제조장비의 가동 여부
- (4)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사후관리 적정성
 - 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취급 관리
 - 나. 제품사용설명서 및 시공지침서 적정성 여부
 - 다. 사후관리를 위한 별도의 조직 운영
 - 라. 소비자 불만의 기록 및 처리

다. 설비심사 (성능검사)

- 지정된 성능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성능검사결과서를 설비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
- ☞ 성능검사기관은 성능검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발행

6. 인증신청서류

□ 필수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세부 제출서류
(공통) 인증신청서(인증 신청서류 양식참조)	
1. 사업자등록증	
2. 공장등록증명서	
3. 중소기업기준검토표(중소기업에 한함)	
4. 제조물책임보험(PL)증서	
5. 설비공급계약서(수입업체에 한함)	
6. 대표자 동의서(인증 신청서류 양식참조)	
7. 신청업체 현황(인증 신청서류 양식참조)	
8. 인증신청 설비제원(도면포함) 현황	

※주)8번 및 10번은 9번에 포함가능

□ 최초인증 신청 서류

필수 제출서류	세부 제출서류
(공통) 인증신청서(인증 신청서류 양식참조)	9. 인증 제품 특징
1. 사업자등록증	10. 제품 전체 공정도,조립공정 매뉴얼 및 지침서
2. 공장등록증명서	11. 제조 장비 보유 목록
3. 중소기업기준검토표(중소기업에 한함)	12. 계측 장비 보유 목록
4. 제조물책임보험(PL)증서	13. 인증 제품 명판 표기사항
5. 설비공급계약서(수입업체에 한함)	
6. 대표자 동의서(인증 신청서류 양식참조)	
7. 신청업체 현황(인증 신청서류 양식참조)	
8. 인증신청 설비제원(도면포함) 현황	

※주)8번 및 10번은 9번에 포함가능

□ 추가인증 신청 서류

필수 제출서류	세부 제출서류
(공통) 인증신청서(인증 신청서류 양식참조)	9. 인증 제품 특징
1. 사업자등록증	10. 제품 전체 공정도,조립공정 매뉴얼 및 지침서
2. 공장등록증명서	11. 인증 제품 명판 표기사항
3. 중소기업기준검토표(중소기업에 한함)	
4. 제조물책임보험(PL)증서	
5. 설비공급계약서(수입업체에 한함)	
6. 대표자 동의서(인증 신청서류 양식참조)	
7. 신청업체 현황(인증 신청서류 양식참조)	
8. 인증신청 설비제원(도면포함) 현황	

※주)8번 및 10번은 9번에 포함가능

□ 공장 현장 확인 같음 서류 (*제출서류 간소화)

대분류	중분류	서류목록	비고
공 통	공정도	전체 공정도 및 조립공정 매뉴얼(지침서)	○ 완제품 제작을 위한 각 공정단계 별 구체적인 공정설명
1.원자재 관리	외주관리	외주업체 관리매뉴얼	○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 또는 반제품 공급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법
		외주업체 관리대장	○ 관리대상 업체리스트, 평가 일자 및 결과 등의 외주업체 관리현황 자료
		외주업체 평가실적	○ 매뉴얼에 명시된 평가양식에 의한 업체별 평가기록서
	원자재·부품관리	원자재 검사 매뉴얼	○ 원자재 입고 시 실시하는 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항목 명시
		원자재 검사실적	○ 매뉴얼에 명시된 평가양식에 의한 원자재 검사기록서
		원자재 부적합 처리매뉴얼	○ 원자재 수입검사 시 부적합으로 판정된 부품에 대한 처리방법
		원자재 부적합 처리실적	○ 원 매뉴얼에 명시된 처리양식에 의한 부적합품 처리기록
	2.품질관리	품질관리문서	품질관리조직도
품질관리 매뉴얼			○ 품질관리 방침, 목표, 담당자 별 역할 등이 명시된 자료
제조검사		제조검사 매뉴얼	○ 공정별 실시하는 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항목 명시
		제조검사 실적	○ 매뉴얼에 명시된 검사 기록양식에 의한 공정검사 기록서
부적합품처리		부적합품 처리 매뉴얼	○ 공정별 검사 시 부적합으로 판정된 반제품에 대한 처리방법
		부적합품 처리실적	○ 매뉴얼에 명시된 처리양식에 의한 부적합품 처리기록
품질관리교육		품질관리 관련 교육계획표	○ 품질관리 관련 사내 연간 교육계획표
		품질관리 교육실적(내/외부)	○ 교육계획에 의해 실시된 교육실적 보고서 및 외부교육 수료증(합격증)

대분류	중분류	서류목록	비고
3.개발 및 제조	제품개발	연구소 및 연구원현황	○기업부설연구소 관련자료 및 조직도
		제품개발 및 개량화 실적	○제품의 성능향상 및 공정개선 등에 대한 연구개발 실적자료
	제조장비	※제조장비 보유목록	○제조장비 리스트 및 장비사양
		제조장비 운전실적	○제조장비 운전에 관한 구체적 방법 및 주기적인 운전기록
		제조장비 점검실적	○제조장비 점검에 관한 구체적방법 및 주기적인 점검기록
	계측장비	※계측장비 보유목록	○계측장비 리스트 및 장비사양
계측장비 검/교정실적		○계측장비별 점검주기 및 검교정 기록	
4.사후관리*	제품취급	제품취급관리 매뉴얼	○제품의 운반, 보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제품취급 관리실적	○매뉴얼에 명시된 관리기록 양식에 의한 제품 취급관리 기록
	사용 및 시공	제품사용설명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제품 설명자료
		제품시공지침서	○제품 시공 시 시공업체에서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자료
	사후관리	사후관리조직도	○사후관리 관련부서 구성현황
		불만처리 매뉴얼	○고객의 불만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불만처리 실적	○매뉴얼에 명시된 처리기록 양식에 의한 불만처리 기록서

주)단, ※표시 사항은 사전 필수 제출 서류임.(인증제품 명판 표기사항 포함)

- ☞ 수입업체일 경우 해외 제조공장의 사후관리(조직, 매뉴얼, 불만처리실적 등) 관련 서류와 별도로 수입업체(인증신청자) 자체 사후관리(조직, 매뉴얼, 불만처리실적 등) 관련서류를 작성 제출해야 함.

신청서류는 원본 확인필을 득한 후 온라인 제출하여 주십시오.
신청서류는 <http://www.energy.or.kr>- “사업안내”-“인증제도”에서 다운로드 가능 합니다.

7. 설비인증 수수료 및 성능검사비용 지원

○ 수수료는 규칙에서 정한 설비인증수수료 및 성능검사수수료 기준에 따라 산출함.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수수료>

가. 인건비 :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 부문을 적용하며, 고급기술자 1인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나. 출장비 : 현지확인을 실시한 경우에 한하며,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한다.

다. 제경비 : 인건비의 50퍼센트로 한다.

라. 기술료 : 인건비의 20퍼센트로 한다.

- 주) 1. 국내출장의 경우 출장비는 ‘서울-대전’ 1박2일을 기준으로 산출
 2. 해외 출장의 경우 이동일수를 별도로 하고 현장확인 일수 2일을 기준으로 하되, 해외출장비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해 산출한다.
 3. ‘추가 신청’은 인증 취득 후 동일품목의 타모델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4. 부가세 포함(백원 이하 절사 후 1.1배)

☞ 2011년 기준 수수료(모델당)

(국내기준) 신규신청 564,300원

추가신청 383,900원

(해외기준) 신규신청 383,900원+항공료+체제비용, 추가신청 383,900원

○ 공장소재지의 이전에 따른 공장확인을 실시할 경우와 불합격 후 재심사 등에 따른 공장확인을 실시할 경우에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 (성능검사비용지원) 중소기업기본법의 의한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1회 제한 (합격에 한함), 예산한도 내에서 성능검사 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음.

- 성능검사비용지원을 신청할 경우, 설비심사를 수행할 성능검사기관은 **중소기업에서 선택** 지정함.(비용은 센터에서 성능검사기관에 직접 지불)
- 성능검사비용을 지원 받고자하는 자는 인증신청 시 지원 여부를 표시해야 함.
- 유사모델 신청의 경우 제품의 성능검사비용이 변경 될 수 있으니, 성능검사기관에 비용을 사전에 확인해야함.

8. 인증유효기간 및 연장

○ 인증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을 원칙으로 한다. (고시 제8조 제3항 개정)

- 인증유효기간은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90일전부터 14일전까지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센터소장에게 **공문** 제출하여야 함.

○ 인증을 받은 자는 설비심사기준이 변경된 경우 성능검사결과서를 3년 단위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 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 함.(단, 유효기간 만료일 전 1년 이내 심사기준 변경된 경우, 제출시기를 변경일로부터 1년까지 유예가능.(성능검사 소요기간 확보))

- 설비세부심사기준의 변경으로 인한 성능검사결과서의 제출 시 변경된 검사항목만을 시험할 수 있음
- 센터 소장은 인증 유효기간 내 인증제품의 생산실적이 없거나 사후관리용 시료 채취가 불가능할 경우 유효기간의 연장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9. 인증설비 사후관리

□ 방 법

-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을 받은 설비에 대하여 성능 및 품질유지를 위해 년 1회 이상 사후관리(성능검사 또는 공장확인) 실시
 - 사후관리용 시료를 시험하여 설비심사기준의 세부기준과 부합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
 - 생산시설 및 인증설비의 품질유지 사항을 확인하는 공장확인

□ 조 치

- 센터소장은 사후관리결과 일반심사기준 또는 설비심사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
 - 일반심사의 경우 인증기관 내부 운영규정에 따라 보완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설비심사 결과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하여, 해당설비의 인증업체로 하여금 제품검사 재심사 기회를 1회 제공하오나, 이 경우 시료 채취는 센터에서 담당함.
- 사후관리 결과 인증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인증 취소를 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 부여.
- 인증 취소 조치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당해 설비의 신청인, 지식경제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통보.
 - 통보한 내용을 언론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
- 인증이 취소된 해당설비는 6개월 이내에 다시 인증신청을 할 수 없음

10. 설비인증 표지

□ 인증 표시 및 홍보

-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그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설비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설비인증을 받은 것을 홍보할 수 있다.
- 설비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설비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설비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法 제14조)

□ 인증 표지

○ 색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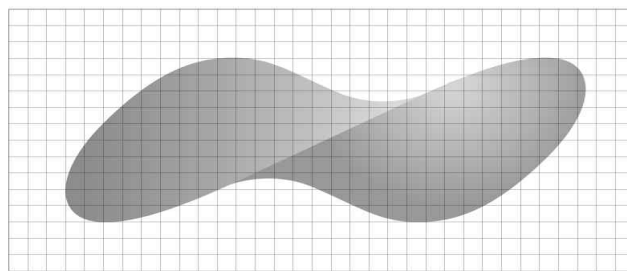


※ 설비인증표지의 색상은 형태와 더불어 일관된 이미지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그라데이션(gradation)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성에 따라 한 가지 색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크기

설비인증표지는 아래에 제시된 그리드(grid)의 비례에 따라 정확하게 제작해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제작할 수 있다.

마크



한글



영문



11. 기타 사항

□ 인증내용의 변경

- 인증업체는 인증내용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규정에 의거 센터에 기재사항 변경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함.(주소, 대표자, 모델명, 사양, 부품등)
 - 인증내용의 변경신고를 접수 후 7일 이내에 인증서를 갱신하여 온라인 교부함
- 인증받은 제품의 사양이 변경되었을 경우 신고해야하며, 이 경우 성능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야 함. (부품, 사양변경 등)
- 인증내용 변경사항이 단순 모델명 변경일 경우 당초 모델명의 신·재생에너지설비와 동등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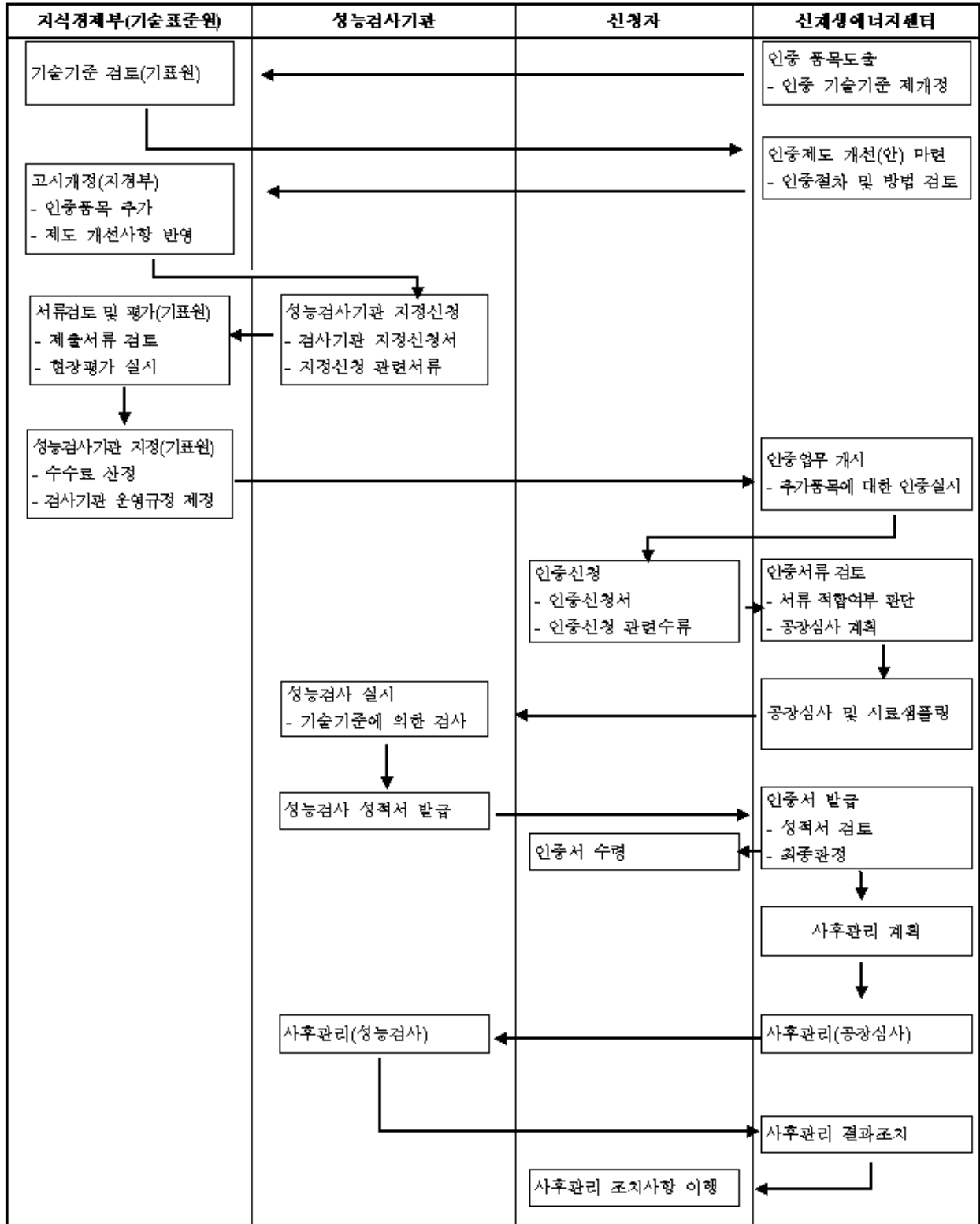
□ 판매실적 보고

인증업체는 인증받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전년도 판매실적 및 금년도 생산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센터소장에게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함.

□ 태양광모듈 인증관련 참고사항

- 유사인증 출력변경('10년 7월부터 시행 중)
 - 유사모델을 기준으로 출력이 $\pm 10\%$ 이하 변경일 경우, 부속서상의 3가지 시험항목(외관검사, 발전성능시험, 절연저항시험)만 실시하여 성능검사를 통과.
 - ※ 유사모델 인증은 '신재생에너지설비심사 세부기준의 부속서'에 정한 특정 성능검사 시험항목만을 실시하여 성능검사를 통과하는 경우로서, 기본모델에서 파생된 유사모델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음.
 - 시리즈인증
 - 인증대상품목 특성에 따라 일정 범위내의 시리즈모델에 대해 인증
 - 시리즈모델 내의 특정 모델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 부적합한 경우 전체 시리즈모델에 대한 인증이 취소됨.
- ☞ 시리즈모델 인증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세부지침 마련 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참고>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업무추진 절차





12. F A Q

[인증 제도 전반]

1.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은 반드시 취득해야 하나?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은 법률로서 규정된 강제제도가 아닌, 임의 인증제도이다.

특히, 인증대상설비가 아닌 경우 인증을 받을 수 없음

2.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취득 시 이점은 ?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는 인증설비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조달청 규정에 의해 입찰시 가산점을 부여받기 때문에 공공분야 판매·조달에 있어 많은 혜택이 있다.

3. 인증을 받으면, 해외인증기관의 인증도 자동적으로 취득 할 수 있나?

⇒그렇지 않다. 현재 태양광 분야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IECEE-CB체계에 의해 인증서를 발급하여 해외 인증기관에 제출 후 타국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 그 전에 해외 인증기관과 상호인정협정 체결이 선행되어야 인증서 활용이 가능하다.(현재 이를 위해 인증기관 간 협의 및 제도 시행준비를 하고 있다.)

4. 신청하고 인증 받을 때까지 얼마나 소요되나?

⇒성능검사 기간을 제외하고 인증신청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를 하고 있으며, 성능검사 기간은 품목별로 다음과 같다.

- 태양열 설비, 태양광 인버터: 3개월 내외
- 태양광 모듈, 신재생에너지발전용 축전지: 6개월 내외
- 지열 열펌프 유닛 : 1주일 내외
- 소형풍력발전시스템 : 6~12개월

※일부 품목은 기후조건에 따라 성능검사 기간이 유동적임

5. 개발한 제품을 인증받고 싶은데 인증품목 외에는 인증을 받을 수 없나?

⇒신재생에너지설비는 기본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 또는 이용하는 설비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단위 설비로서 관련 기술기준 및 성능검사설비가 갖추어져야 인증이 가능하다. 복잡한 시스템 및 세부적인 부품의 경우 관련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증품목으로 포함하기 어렵고, 그 외의 경우 필요요성, 우선순위에 따라 인증품목에 포함시켜야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6. 인증품목 추가는 어떻게 ?

⇒인증품목 확대를 위해 매년 업체, 전문가 등에 인증품목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과제 수요조사를 상시 진행하고 있어 인증품목 기술기준 제정에 관한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제시된 의견은 관련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통해 심의하여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과제로 진행이 되며, 과제를 통해 기술기준 및 성능검사기관 지정요건이 마련되면 지식경제부 고시, 센터 인증업무 운영규정 제·개정을 통해 반영하며, 성능검사기관이 지정되면 설비인증을 할 수 있다. (과제접수는 <http://racer.kemco.or.kr/index.jsp> 상단에 '연구과제' - '과제접수'에서 가능)

※인증품목 추가절차

업무 추진체계	세부 내용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품목 제안접수 (공단)</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가능성 및 산업육성이 가능한 품목을 대상으로 과제 접수 ※공단 홈페이지 연중접수 (http://racer.kemco.or.kr/index.js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전문가평가(2회) (공단)</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1차 평가 (공단내부검토 및 기표원 협의) - 제 2차 평가 (외부 전문가 평가)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신규과제 협약 (공단→주관기관)</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과제 공고/선정/협약(지경부 승인) ※예산범위 내 기술기준(안) 작성 및 성능 검사 장비 구축지원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신규품목 기술기준 공청회 (공단)</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기준 공청회 개최 및 자문회의 개최 (제조업체, 성능검사기관, 전문기업)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고시개정 (공단→지경부)</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시개정(안) 제출 및 고시개정 ※신규 인증품목 반영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공단 운영규정 개정 (공단)</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 인증 운영규정 개정 ※신규 인증품목 기술기준 추가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성능검사기관 지정 (기표원)</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능검사기관 지정 및 인증업무 개시

※ 해외 수입제품에 대한 신규 인증품목 신청 경우도 위와 동일하게 진행

7. 인증기준 및 제도안내에 대한 영문 안내자료가 있나?

⇒현재는 영문 안내자료가 구비되어 있지 않으나 최근 해외 수입제품에 관한 인증문의 급증에 따라 현지 제조업체가 적절히 준비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 관련 영문 안내자료를 계획하고 있다.

8. 인증제품의 판매는 인증받은 업체만 할 수 있나 ?

⇒인증제품으로서의 인증표시 권한은 인증업체에게만 있으며 인증업체의 허락없이 제품에 인증표시가 이루어졌을 경우 인증 허위표시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인증신청 관련]

9. 신청자의 자격요건은 ?

⇒신청자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자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로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해외 제조사가 직접 신청할 수 없다.

10. 제조사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OEM형식으로 제조된 제품을 인증신청할 수 있나?

⇒국내의 경우 해당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사에서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해외 제조사도 마찬가지로 직접 해당제품을 생산해야 인정이 된다

11. 신청접수 방법은 ?

⇒온라인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12. 신청서의 작성 언어는 한국어만 가능 ?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한국어만 사용 가능하다.

13. 인증신청서류 작성이 어려운데 타사 신청서류 열람 및 참고자료 제공이 가능한가?

⇒인증신청서류는 신청업체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 심사원이 인증심사 진행에만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 또는 다른 품목의 신청서류도 열람이 불가능하다.

다만 인증신청서류 작성에 관한 요령, 양식 등에 관하여 일반적인 안내는 가능하므로, 인

증안내 책자를 참조하거나 담당 심사원에게 문의하면 된다.

14. 동일 제품을 국내 여러 수입사가 수입할 경우 어떤 회사가 먼저 인증을 취득하면 다른 회사는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나?

⇒기본적으로 수입업체의 사후관리 능력까지 고려하여 인증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해당 업체가 아닌 다른 수입업체는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한 개의 모델에 대하여 동일 모델명으로 복수 인증서 발급이 불가하며, 모델명 변경 후 후속업체의 인증 신청 시, 성능검사 및 공장확인에 대한 면제나 생략 없이 동일한 절차에 의해 진행된다.

15. 기본모델과 유사모델의 차이가 무엇인가?

⇒기본모델은 원칙적으로 기술기준 상의 모든 시험을 하는 모델을 말하며, 기본 모델과 유사성이 있는 제품에 관해서는 그 차이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시험을 하는 모델을 뜻한다.

16. 유사모델로 인증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기본모델에 대해 인증을 취득한 후 유사모델에 대한 인증신청을 할 수 있다.

인증 진행절차는 기본모델과 동일하며, 유사모델에 대한 시험 항목 및 수수료에 관한 안내는 센터 홈페이지(www.energy.or.kr)에 접속하여 “인증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태양광모듈의 경우 유사모델 안내자료[기술기준 부속서] 참조)

17. 중소기업일 경우 인증 신청 시 성능검사비용에 대한 지원이 있나?

⇒국내에서 제조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연1회 범위(합격에 한함)에서 성능검사비용의 80%를 지원하고 있으며, 인증 신청 시 성능검사 비용지원 신청을 함께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8. 인증취득 후 인증서에 대한 양도가 가능한가?

⇒원칙적으로 인증서 양도는 불가하다. 다만 인증업체에 대한 인수합병 등으로 인한 특수한 경우에는 인력 및 시스템 등에 대한 확인 후 인정할 수 있다.

19. 인증절차가 바뀌게 되면 그 이전에 접수·진행했을 경우에는 바뀐 절차를 따라야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능검사 신청 또는 인증신청이 인증절차 개정(고시개정) 전에 이루어졌을 경우 개정 전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20. 인증신청 시 납부하는 비용은 어떻게 되나? (**12년 1월 현재**)

⇒모델별로 인증신청비용을 받고 있으며, 비용은 다음과 같다.

- 최초신청 시(국내제품): 564,300원
- 추가신청 시(국내제품): 383,900원
- 최초신청 시(해외제품): 383,900원+공장확인 체제비용(항공료, 체제비)
- 추가신청 시(해외제품): 383,900원

*인증비용 및 성능검사비용은 노임단가 기준 변경 시 변경될 수 있음

21. 성능검사 시 적용하는 시험기준은?

⇒각 인증품목별로 기술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자료는 센터 홈페이지(www.energy.or.kr)에 접속하여 '사업안내' - '인증제도' - '관련서류' 에서 확인할 수 있다.

22. 시험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준이 개정되었을 경우는 새로 시험을 받아야 하나?

⇒기준변경이 있을 경우는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정된 기준으로 시험을 받아야 인증이 유지되며, 원칙적으로 종전 기준에 의해 인증받은 제품은 기준변경일로부터 1년까지는 인증제품으로서 취급한다.

23. 시험기준이 변했을 때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센터 홈페이지(www.energy.or.kr)로 접속하여 '사업안내' - '인증제도' - '관련서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설명회 개최 및 인증 안내책자 배포 등을 통해 변경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24. 시험용 샘플은 어느 정도 필요하며, 성능검사 비용은?

⇒각 품목별 샘플 수량 및 성능검사 비용은 센터 홈페이지(www.energy.or.kr)로 접속하여 '사업안내' - '인증제도' - '성능검사기관 지정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25. 시험용 샘플은 신청자가 직접 성능검사기관에 제공하면 되나?

⇒아니다. 최초 신청 시에는 심사원이 직접 시료를 샘플링하며, 추가 신청부터는 인증기관의 성능검사신청 안내에 따라 신청자가 직접 샘플링하여 성능검사기관으로 의뢰할 수 있다. (고시개정에 따라 '09.12.15 변경)

26. 성능검사 성적서의 유효기간은?

⇒성적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을 하셔야 인정받을 수 있다.

27. 성능검사기관이 복수로 지정되어 있는 품목에 대해 신청할 경우 시험기관을 임의로 선정할 수 있나?

⇒복수 성능검사기관에 대한 기관 선정은 자율적으로 하면 된다.

28. 성능검사 성적서의 양도가 가능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인증서 양도와 마찬가지로 인증업체에 대한 인수·합병 등의 특수한 경우에만 인력 및 품질관리 시스템 등을 확인 후 양도될 수 있다.

[일반심사(공장확인)] -센터 심사원이 공장을 방문 심사

29. 공장확인의 목적은 무엇이며, 무엇을 조사 하는가 ?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에서의 인증취득을 희망하면, 그 제품이 항상 일정한 품질관리 하에서 제조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장방문과 함께 품질관리체제 및 그 제품의 규격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한다.

30. 공장확인 시에 공장측에서 준비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이 있나?

⇒인증신청 시 제출한 서류내용을 바탕으로 원자재관리, 제품제조, 품질관리부문, 사후관리 분야에 대한 관련문서 및 제조공정 등 현장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31. 공장확인 소요기간은 어떻게 되나?

⇒국내공장은 1인 1일, 해외공장은 1인 2일을 규정하고 있다.

32. 인증제품의 제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도 공장확인이 가능한가 ?

⇒공장확인 당일에 신청제품에 대한 제조가 이루어져야 확인이 가능하다.

33. 공장확인 일정을 정할때 신청자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가 ?

⇒원칙적으로 공장확인 일정은 신청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정하고 있다.

34. 공장확인은 누가 실시하는가?

⇒인증기관의 심사원 1인이 확인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원의 심사 진행에 대한 참관 형식으로 인증기관의 직원이 추가로 참여할 수 있다.

35. 해외심사의 경우 인증신청자(수입판매자)가 심사에 꼭 참여해야 하나?

⇒수입판매자가 인증 신청자이기 때문에 현지 공장의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시스템 조정 및 관리 권한 등을 판단하고, 계약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심사에 응하는 것이 원칙이다.

36. 공장확인결과 불합격일 경우 다시 신청이 가능한가?

⇒공장확인에서 불합격이 된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3개월 내에 1회에 한하여 불합격 사항에 대해 보완 후 인증재신청을 할 수 있다.

37. 해외심사 시 심사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

⇒원칙적으로 인증신청자(수입업체)에서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인증마크 등의 표시]



38. 인증 취득 후 인증제품에 표시해야할 사항은?

⇒인증제품으로 판매 시 인증마크(좌측그림 참조)와 명판의 표시는 필수사항이며, 제품 본체에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인증명판 표기사항은 1. 업체명 및 소재지 2. 설비명 3. 모델명 4.규격 5. 제조일자 6.인증번호 7. A/S연락처 등이다.

39. 인증명판 양식이나 표시언어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명판은 기존라벨에 표기사항을 추가하거나 별도로 명판을 제작하여 부착할 수 있으며 양식이나 사이즈에 대한 규정은 없다. 언어는 국문 및 영문표기가 모두 가능하다.

40. 인증명판 표시사항 외의 내용은 표기가 불가능하나?

⇒아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항은 필수 표시사항이며 그 외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추가사항에 대해 표시할 수 있다.

41. 인증 진행 중에 제조된 제품을 인증 취득 후에 인증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인증 취득 후 제조된 제품만 인증제품으로 취급하며, 인증 후에 인증마크 및 인증명판을 부착할 수 있다.

42. 해외제품의 경우 인증업체 외에 타 업체가 동일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할 수 있는가?

⇒동일제품을 인증업체 외의 타 업체가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나, 국내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마크를 부착하여 인증제품으로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증 변경절차]

43. 공장이전이나 인증을 받은 제품을 다른 공장에서도 제조하기 위한 절차는?

⇒제조공장이 이전한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며, 다른 공장(소재지)에서 제조할 경우에도 해당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별도의 공장확인 후 인증서가 재발급 된다.

44. 인증을 취득한 후 모델명 변경은 가능한가?

⇒변경신청서와 인증제품과 동등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검토 후 인증서를 재발급해준다

45. 인증제품의 구성 및 설계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

⇒인증기관에 변경내용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면 해당내용을 검토 후 추가 시험 여부 등을 판단하여 진행 후 처리해준다. (품목별 적용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니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요망)

[인증설비 사후관리]

46. 사후관리 시기와 방법은?

⇒사후관리는 인증 취득 후 1년 단위로 불시에 실시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 발생 시에는 즉시 실시하고 있다. 사후관리는 공장확인과 성능검사로 구분 실시한다.

47. 사후관리는 제품검사만 하나?

⇒사후관리는 원칙적으로 생산시설 및 인증제품의 품질유지 사항을 확인하는 공장확인과 설비심사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로 구분되며, 인증기관(센터)에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48. 사후관리에 수반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사후관리에 수반되는 제품검사 비용, 공장확인 비용 등은 센터에서 부담한다.
(1차 시료에 대한 성능검사 결과 불합격시 재시험 비용은 업체 부담)
단, 시험용 시료는 인증업체에서 부담한다.

49. 공장확인 사후관리에서 불합격이 되면 인증이 취소되나?

⇒공장확인 사후관리 불합격이 결정되면 1회에 한하여 보완기회를 주고, 이후에도 보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를 통하여 인증취소 여부를 판단한다.

50. 인증이 취소되면 해당제품의 재신청은 가능하나?

⇒인증이 취소된 제품은 취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51. 인증제품에 대한 유효기간이 있나?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이 기간 내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사항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전부터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인증 유효기간(3년) 내 인증제품의 생산실적이 없거나 사후관리용 시료채취가 불가능할 경우 유효기간의 연장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3. 인증 신청서류 양식

- 가.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 신청서
- 나. 대표자 동의서
- 다.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 일반심사 관련 자료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 신청서				처리기간
				14 일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능검사비용지원	<input type="checkbox"/> 신청 <input type="checkbox"/> 비신청
소재지	사 무 소	☎		
	사 업 소	☎		
인증대상설비		분야		
		설비명		
		모델명		용량
<p>지식경제부고시 제20 - 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에너지관리공단 부설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 하</p>				
<p>구비서류</p> <p>1. 규정 제6조제1항1의 일반심사기준 관련서류</p>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 일반심사 관련 자료

1. 신청업체 현황(※수입제품일 경우 해외제조사 현황 별도작성)

(1) 일반현황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Home Page					
담당자	성명	소속		전화		e-mail			
소재지	사무소			전화		팩스			
	공장			전화		팩스			
종업원수		총 명(석·박사 명, 자격증소지자 명)			주생산품목				
자본금		백만원		공장규모		대지		m ²	
						건물		m ²	
신청품목				생산능력		/년	매출실적		
				생산실적		/년	수출실적		
기타품목				생산능력		-	매출실적		
종업원 (명)		임원	사무직	기술직	기타		계		관련기술 자격 현황

(2) 인증신청 대상품목			
품목	규격	모델명	비고

(3) 인증신청품목 이외의 생산제품

(4) 회사 주요연혁

2. 인증제품의 특징

가. 총괄표

비 교 항 목		시중에 유통되는 일반제품	인증신청제품
기술 내용	설 계		
	재 질		
	부 품		
	기 타		
성능	규격		
	내구성		
	효율		
	에너지대체 효과		
	기타		
보급 전망	판매단가	신청업체 타 사 업체 평균	
	국내보급량	타 사 포함(과거 5년간)	
	국내보급 가 능 량	향후 5년간	
	년 간 수 출 량	타 사 포함(과거 5년간)	
	수 출 가 능 량	향후 5년간	

나. 인증신청제품의 기술내용(서술식으로 상세히 기술)

인증신청제품의 설계, 재질, 부품 등에 대하여

- 기술의 발전 추이
- 시중제품(일반제품)의 문제점
- 인증신청제품의 기술개발 내용 및 애로사항
- 기술내용의 향후 전망
- 타 사 제품과 비교하여 자사 제품의 우수성 또는 특징 등

다. 인증신청제품의 성능(상세히 기술)

- 규격, 효율, 내구성, 에너지절약효과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기술
- 근거 제시 등

라. 인증신청제품의 보급 현황 및 보급가능성(상세히 기술)

- 국내시장에의 국내제품과 외국제품과의 보급량(비율)
- 판매량 상위 2~5개사(국내 2~5개사, 외국 2~5개사)
- 판매량 상위 2~5개사의 분석(기술적, 판매 대리점, 홍보 등의 우수성)
- 판매애로사항(법적규제, 기술적 또는 사회적 애로사항) 등

마. 주요 부품, 구조명세서 및 용량(성능,효율)등 설명

- 설비품목별 심사기준에 따르되, 심사기준에 명시되지 않는 경우, 자체 설계(시험)치 제시

- 바. 인증신청 제품의 전/후/좌/우를 구분할 수 있는 사진
- 사. 설계도면 (전기용품의 경우 회로구성도 포함)
- 아. 인증신청 제품의 전체공정도, 조립공정 매뉴얼 및 지침서

예시) 제조 공정도

공정명	관리		검사			제 조 업체명
	관리항목	관리방법	검사항목	검사방법	매뉴얼 (지침서)	
원자재공급	수량 등	육안검사	파손 등	수입면장		xxx
수입검사			수량, 규격, 품질	부품검사규격	xx-001	
가공						
중간검사			구조, 치수 조립성	부품검사규격	xx-002	
저장	모델별 보관	관리대장				
자재불출	규격, 수량	관리대장				

< 3항 이하는 공장 심사시 현장 확인으로 같음하나, 아래 ※표기된 제조장비 및 계측장비 보유 목록과 인증제품 명판표기사항 자료는 사전 필수제출 서류임.>

3. 원자재 관리

가. 외주업체 관리매뉴얼

-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 또는 반제품 공급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법

나. 외주업체 관리대장

- 관리대상 업체리스트, 평가 일자 및 결과 등의 외주업체 관리현황 자료

다. 외주업체 평가실적[샘플로 1~2개 실적만 제공]

- 매뉴얼에 명시된 평가양식에 의한 업체 별 평가기록서

라. 원자재(수입부품(자재) 및 외주처리 반제품 포함) 검사 매뉴얼

- 원자재 입고 시 실시하는 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항목 명시

마. 원자재(수입부품(자재) 및 외주처리 반제품 포함) 검사실적[샘플로 1~2개 실적만 제공]

- 매뉴얼에 명시된 평가양식에 의한 원자재 검사기록서

바. 원자재(수입부품(자재) 및 외주처리 반제품 포함) 부적합 처리매뉴얼

- 자재 원자재 검사 시 부적합으로 판정된 부품에 대한 처리방법

사. 원자재 부적합 처리실적[샘플로 1~2개 실적만 제공]

- 매뉴얼에 명시된 처리양식에 의한 부적합품 처리기록

아. 수입면장, 제품설명서 사본(원자재가 수입품인 경우)

자. 세부부품의 상세명세서

예시) 세부 부품명세서

구분	부품명	용도	규격	관리(검사) 방법	제조업체명	공급업체명
1					*업체명 *연락처	*업체명 *연락처
2					*수입품인경우 원산지 표기	
3						
4						

4. 품질유지 관리

가. 품질관리조직도

- 품질관리 관련부서 구성현황

나. 품질관리 매뉴얼

- 품질관리 방침, 목표, 담당자 별 역할이 명시된 자료

다. 제조검사 매뉴얼

- 공정별 실시하는 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항목 명시

라. 제조검사 실적[샘플로 1~2개 실적만 제공]

- 매뉴얼에 명시된 검사 기록양식에 의한 공정검사 기록서

마. 제조 상 부적합품 처리 매뉴얼

- 공정별 검사 시 부적합으로 판정된 반제품에 대한 처리방법

바. 제조 상 부적합품 처리실적[샘플로 1~2개 실적만 제공]

- 매뉴얼에 명시된 처리양식에 의한 부적합품 처리기록

사. 품질관리 관련 교육계획표

- 품질관리 관련 사내 연간 교육계획표

아. 품질관리 교육실적(내/외부)

- 교육계획에 의해 실시된 교육실적 보고서 및 외부교육 수료증(합격증)

5. 제품개발 및 제조

가. 연구소 및 연구원현황

- 기업부설연구소 관련자료 및 조직도

나. 제품개발 및 개량화 실적

- 제품의 성능향상 및 공정개선 등에 대한 연구개발 실적자료

※ 다. 제조장비 보유목록

- 제조장비 리스트 및 장비사양

- 라. 제조장비 운전실적[샘플로 1~2개 실적만 제공]
 - 제조장비 운전에 관한 구체적 방법 및 주기적인 운전기록
- 마. 제조장비 점검실적[샘플로 1~2개 실적만 제공]
 - 제조장비 점검에 관한 구체적 방법 및 주기적인 점검기록

※ 바. 계측장비 보유목록

- 계측장비 리스트 및 장비사양

- 사. 계측장비 검/교정 실적[샘플로 1~2개 실적만 제공]
 - 계측장비별 점검주기 및 검/교정 기록
- 아. 제조설비 및 계측장비 운영현황(공정별로 순차적으로 작성)

예시) 장비 운영현황

공 정 별		제 조 및 계 측 장 비	
공 정 명	사 진 (설 명)	제 조 설 비 사 진 (설 명)	설 비 보 유 업 체 (외 주 포 함)
		계 측 설 비 사 진 (설 명)	설 비 보 유 업 체 검·교 정 일 자 등
1			
2			
3			
4			

6. 사후관리

가. 제품취급관리 매뉴얼

- 제품의 운반, 보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나. 제품취급 관리실적[샘플로 1~2개 실적만 제공]

- 매뉴얼에 명시된 관리기록 양식에 의한 제품 취급관리 기록

다. 제품 사용 설명서

-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제품 설명자료

라. 제품 시공 지침서

- 제품 시공 시 시공업체에서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자료

마. 사후관리조직도

- 사후관리 관련부서 구성현황(수입업체일 경우 제조사의 사후관리 조직도와 수입업체 사후관리 조직도 제시)

바. 불만처리 매뉴얼

- 고객의 불만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사. 불만처리 실적[샘플로 1~2개 실적만 제공]

- 매뉴얼에 명시된 처리기록 양식에 의한 불만 처리기록서

※아. 인증제품 명판표기 사항(해당품목 기술기준에 명시된 표기사항 우선적용)

- 업체 명 및 소재지, 설비 명, 모델명, 규격
- 제조 년/월/일, 인증부여번호, A/S 연락처
- 기타 전기용품안전인증서등 법으로 정한 사항

* 수입업체일 경우 해외 제조공장의 사후관리(조직, 매뉴얼, 불만처리실적등) 관련 서류와 별도로 수입업체 자체 사후관리(조직, 매뉴얼, 불만처리실적등) 관련서류를 작성해야함

신청서류 제출 요령

○ 신청서류는 다음 순서대로 작성 후 온라인 제출

1.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 신청서(인증 신청서류 양식참조)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4. 중소기업 기준검토표(중소기업에 한함)
5. 제조물책임보험(PL)증서
6. 설비공급계약서(수입업체에 한함)
7. 대표자 동의서(인증 신청서류 양식참조)
8.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 일반심사 관련 자료(인증 신청서류 양식참조)
(인증제품 특징, 제품전체 공정도, 조립 공정 매뉴얼 외)

<인증신청서류 작성, 제출 시 유의사항>

- 첨부제출 서류 중, 기 인증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동일하다면 생략가능
- 원본을 제외한 모든 제출서류에는 “원본대조필” (대표자 날인) 확인



14. 인증 신청서류 체크 리스트

인증신청 제출서류 CHECK LIST

1. 필수 제출서류

제출서류	세부제출서류	Yes	No
	(공통) 인증신청서(인증 신청서류 양식참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 사업자등록증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공장등록증명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중소기업 기준검토표(중소기업에 한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제조물책임보험(PL)증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설비공급계약서(수입업체에 한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대표자동의서(인증 신청서류 양식참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신청업체 현황(인증신청서류 양식참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 인증신청 설비제원(도면포함)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9. 인증제품 특징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0.제품전체 공정도, 조립공정 매뉴얼 및 지침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1.제조장비 보유 목록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2.계측장비 보유 목록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3.인증제품 명판 표기사항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주)8번 및 10번은 9번에 포함 가능

2. 공장 심사 시 현장확인으로 갈음하는 서류 (※서류 간소화)

공장심사	분류	점검항목	Yes	No
공 통	공정도	전체 조립공정 매뉴얼(지침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 원자재관리	외주관리	외주업체관리 매뉴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외주업체 관리대장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외주업체평가기록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원자재·부품관리	원자재·부품 관리 매뉴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원자재·부품 검사실적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원자재·부품 부적합품 관리대장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품질관리	품질관리문서	품질관리조직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품질관리 매뉴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제조검사	제조검사 매뉴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제조검사 실적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부적합품 처리	불량품 처리 매뉴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불량품 처리 및 검사실적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품질관리교육	품질관리 교육계획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품질관리 교육실적(내/외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개발 및 제조	제품개발	연구소 및 연구원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제품개발 및 개량화 실적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제조장비	제조장비 보유목록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제조장비 운전실적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제조장비 점검실적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계측장비	계측장비 보유목록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계측장비 점검실적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계측장비 검/교정 실적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사후관리	제품취급	제품취급관리 매뉴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제품취급 관리실적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사용 및 시공	제품사용설명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제품시공지침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사후관리	사후관리조직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사후관리규정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불만처리 및 유지	불만처리 매뉴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불만처리 실적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수입업체일 경우 해외 제조공장의 사후관리(조직, 매뉴얼, 불만처리실적등) 관련 서류와 별도로 수입업체 자체 사후관리(조직, 매뉴얼, 불만처리실적등) 관련서류를 작성해야함



15. 기타 참고 양식

- 가.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나.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신청서(재심사)
- 다.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서[기재사항변경,재교부]신청서
- 라. 신·재생에너지설비 판매실적 통보서
- 마.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 표지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사무소소재지	☎				
공장소재지	☎				
연장신청대상설비	분 야				
	품 목				
	모델명		용량		
<p>지식경제부 고시 제20 - 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20</p> <p>신 청 인 (서명 또는 인)</p> <p>에너지관리공단 부설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p>					
<p>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품사진/부품명세서/설계(회로)도면 2. 제품의 구조 및 성능이 변경되었을 경우 시험성적서 3. 제품의 생산실적 증빙서류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신청서(재심사)				처리기간
				14 일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소재지	사 무 소	☎		
	공 장	☎		
인증대상설비	분 야			
	설비명			
	모델명		용량	
불합격통보일				
보완내역				
<p>지식경제부고시 제20 - 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 하</p>				
<p>구비서류</p> <p>1. 고시 제6조제1항1의 일반심사기준 관련서류 중 처음 신청할 때와 변경된 부분</p>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표지>

1. 색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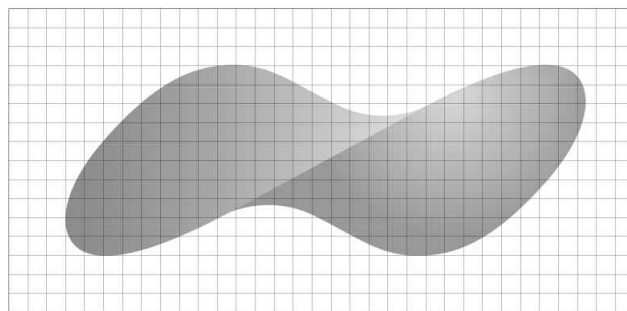


※ 설비인증표지의 색상은 형태와 더불어 일관된 이미지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그라데이션(gradation)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성에 따라 한 가지 색상으로 표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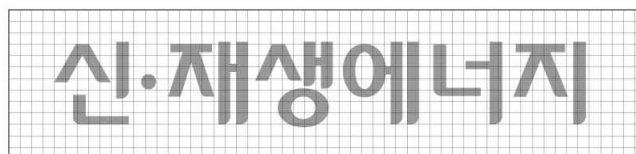
2. 크기

설비인증표지는 아래에 제시된 그리드(grid)의 비례에 따라 정확하게 제작해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제작할 수 있다.

마크



한글



영문

